

다른 기사 참조, 명예훼손의 정당한 항변이 될까?

도진수 법무법인 진수 변호사

2025년 2월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혐의로 1인 인터넷 언론사 소속 기자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언론사 기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타 언론사의 기사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무엇이었을까.

I.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D 업체의 대표 피해자 C는 ○○ 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4, 5차 PT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24. 1. 11.경 B 언론사 사무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피해자

C에 관한 기사를 게시했다. 피고인 A는 “C 후보(전 D 업체 대표) ‘참패한 ○○ 엑스포 PT에 관여?’ 프리젠테이션 질 낮아 몰매, C 후보 책임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 엑스포 유치 참패의 원인으로는 최종 PT(5차 PT)가 꼽힌다. 문제가 된 4, 5차 PT의 제작 업체는 C 후보가 대표로 있던 D 업체였으며, 호평받던 타 업체가 배제되고 몰매를 맞은 D가 최종 PT 업체로 왜 선정됐는지는 추후 보도 예정, C 후보는 당시 D 업체 책임자였기 때문에 ○○ 엑스포 참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2.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4. 4.경 전향 기재 언론사 사무실에서, “[단독] 진원지 확인 안 된 ‘E 후보 1.4%P 진다’에 총괄선대위원장 ‘화들짝’”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소 자체 여론조사에서 E 후보가 다른 정당 F 후보에 1.4%P 차이로 지고 있다는 말이 알려지면서”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II.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해당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문 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2023. 12. 10.자 기사를 전송받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위 전송받은 기사를 확인한 다음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C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III. 법원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가. 주요 인용 판례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

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라는 판례를 인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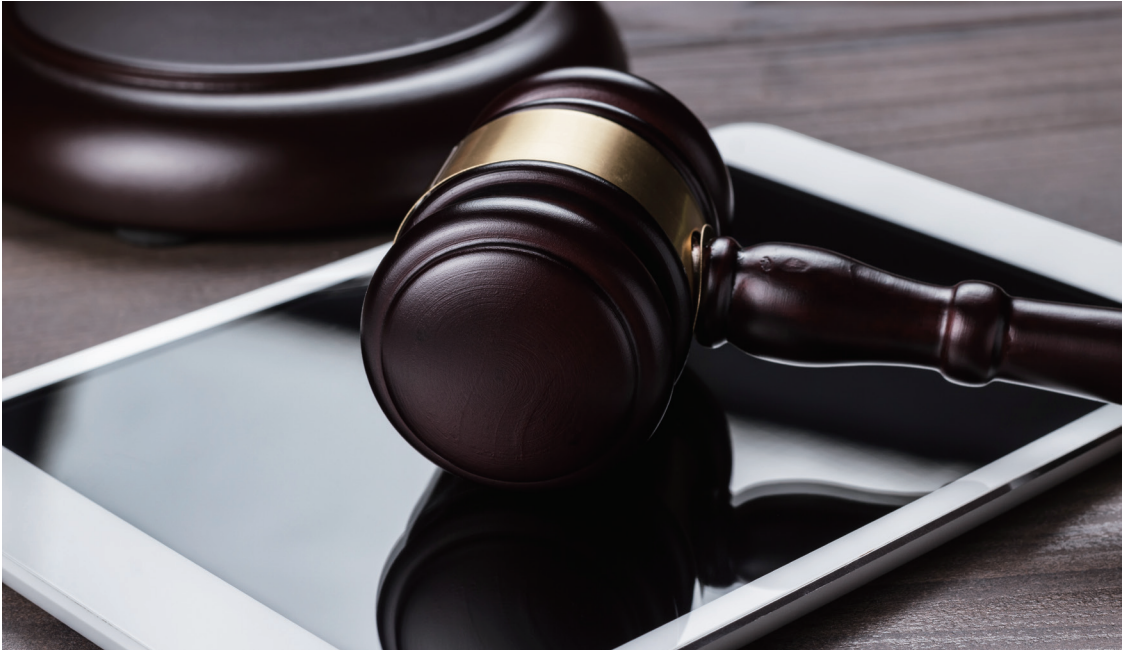
나. 구체적 판단

- 1) 법원은, ○○ 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C가 과거 대표로 재직하였던 D는 위 4, 5차 PT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 2) 피고인이 참고한 타 언론사의 기사 수정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 언론사는 2023. 12. 6.자 해당 기사와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같은 달 12. 10. 종이신문에, 다음날 온라인에 각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타 언론사는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12. 12. 위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다. 그리고 12. 13. ‘취재에 따르면 D는 ○○ 엑스포 홍보를 위해 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파리 심포지엄과 국내 현지실사 일정 부분만을 담당하였고, 문제가 된 4, 5차 PT를 제작한 업체는 타 업체다.’라는 취지의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 3) 그 이후 피고인의 기사 작성일인 2024. 1. 11. 이전까지 4곳의 언론사에서 ‘○○ 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4, 5차 PT는 타 업체에서 제작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 4)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게재한 2024. 1. 11. 무렵 위 신문 기사 작성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를 찾아서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위 온라인 기사는 2023. 12. 12.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였다.
- 5) 피고인은 참조한 원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찾지 못하였고, 이미 4곳의 언론사에 위 4, 5차 PT의 제작 업체가 타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음에도 다른 기사 등을 검색해 보는 등 신문 기사로 게재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삭제된 원본 기사와 정정보도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정보도 기사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문 기사 작성 시 참고한 언론 보도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 앞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고한 언론 보도자료는 이미 삭제된 이 사건 온라인 기사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7)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 엑스포 4, 5차 PT 제작 업체는 타 업체라는 내용의 다수의 기사를 제시받자, 돌연 이 사건 신문 기사를 작성할 무렵 다른 인터넷 기사를 통해 찾아본 내용은 ○○ 엑스포 4, 5차 PT를 작성할 무렵 C 후보가 D 대표인지 몰랐다고 하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C 후보가 D 대표였던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였느냐는 질문에는 '나무위키'에서 확인하였다고 답했다.
- 8) 이 사건 신문 기사에는, ▲피해자 C가 당시 D 업체에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는 내용, ▲ 피해자 C는 ○○ 엑스포 홍보영상 계약을 체결하고는 2023. 3. 28. 타 업체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당시 D 업체 책임자였기 때문에 ○○ 엑스포 참패에 대한 책



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 ▲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 유권자들은 피해자 C를 불신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 C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9) 앞서 인정한 바처럼, ○○ 엑스포 유치 관련 PT는 모두 타 업체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4차 PT는 2023. 6. 20.에, 5차 PT는 2023. 11. 28.에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신문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C는 2023. 3. 28. 타 업체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D 대표직을 내려 놓았다. 해당 기사는 C가 ○○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러한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한 기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것이다.

10) 피고인은 기사를 게재한 2024. 1. 11. 이후 예비후보자 C의 선거 캠프의 언론 담당자로부터 피고인이 참고한 12. 13.자 정정보도 기사 내용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적어도 참조한 기사가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문 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재하여 두었다. 2024. 3월경 공천에서 탈락한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문 기사를 비롯하여 관련 기사를 내려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 11) 피고인은 C가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24. 1. 8.경부터 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결정되기 직전인 2024. 3. 11.경까지 C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9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024. 4월 초순경 총선 무렵까지는 C와 같은 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총 12건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를 옹호하는 기사들만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공표·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고, 예비후보자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 공직선거법 위반(각종제한규정위반죄)

가. 주요 인용 결정례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갖는 부정적 효과(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게 만드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이른바 열세자 효과)가 극대화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바64 결정 참조).”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였다.

나. 법원의 구체적 판단

- 1) 피고인은 2019. 7월경부터 이 부분 범행 무렵인 2024. 4월경까지 1인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자 겸 편집·발행인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사의 작성 및 게재 경험이 적지 않았다.

-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은 알고 있고 저희 끼리는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는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결과를 발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주의사항 등 자료를 선거 전에 받으므로 위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전부터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존재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실제로 피고인은 2024. 4. 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6일 이전인 2024. 4. 2. 및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게재함에 있어 ‘해당 여론조사는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되었다’는 내용을 기사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 4)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에 모의 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식 및 비공식과 무관하게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하고, 피고인은 정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식 여론조사의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기사로 게재하였다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8항은 ‘정당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설령 피고인이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3. 양형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서, 보도한 기사의 허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사를 본 선거구민들은 C의 후보자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C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공천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당내 경선 결과나 C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V. 판례토크

위 판례는 1인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는 시대에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기사 작성 당시 다른 기사를 참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증 절차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다.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서 그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 고의나 비방의 목적은 내심의 영역이므로, 그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밀하게 판시된 구체적 판단 부분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